

뉴스레터(제2호) 원고

Q 성매매하면서 감금 폭행 협박 당했습니다... 19 40
질문 3건 질문마감률 100% | 2013. 8. 5
답변 3 | 조회 26

이런데에 울리기 정말 쪽팔리고 민망하지만 ..
인터넷채팅으로 한남자를만나서 모텔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남자는 2만원을 더줄테니 집을가자했습니다 ..
그래서 집을 가서 성관계를 맺으려했지만 그남자가 피곤해서 잘안된다면서 원래는 6시 반까지 잇기로했습니
다... 아무리 그런걸로 만나도 약속이라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남자는 계속 30분만 더있다가 가라고 말을했지만 저도 약속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입으려하자 뒤에서 목을조르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벨트로 손목을 묶이고 각종 폭행을 당했습니다 ..
제가 미안하다면서 그러니 그러면 자신이 사정을하게 해달라했습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또맛을까봐... 그더
러운놈과 했습니다 ... 구강성교를 억지로 시키면서 때렸습니다 ... 욕은 기본이고 폭행도 기본이었습니다 ...
그러다 2시가 지나서.. 저는 감금을 당하고 ... 폭행도 수차례 당하고... 성관계도 ... 제 성기가 찢어질때까
지 ... 그러다 여차저차.. 계속.. 쉬지도 않고 ... 아침6시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9시가 되었고 그사람은 저를 손 발 입 전부 묶어놓고 장롱에 가렸습니다 ..
그럼10분뒤 그사람이 들어오고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려고 협박을 했습니다 ...
그리고나서 술병으로 제 성기 모든곳에 다 넣고.. 10분동안 피스톤을 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
지금 얼굴을 보면 왼쪽팔대뼈쪽이 부어있고 제대로 걸지도 못하고 밖에도 못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미사람이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차피 너가 신고해도 수사기간이 길어서 1년뒤에
판결이 날것이며 자신이 감옥에 가도 6개월밖에 안산다고 그랬습니다 .. 그러면서 여차피 너 가면 나 잠수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했습니다 ... 친구는 흥신소를 해서 저를 팔아 넘길수도 있다고 했구요 ...
정말 무섭습니다이거 답변좀.. 제발 빨리 해주세요....

작성자 : [REDACTED]

작성일 : 2013. 8. 5

Newsletter No.2

사이버포래상담실

서울시 강서구 [REDACTED]

|| 02-6348-1318 || 010-3232-1318 || [REDACTED]

■ **길에서 보내는 편지** <길에서 보내는 편지>는 우리네 활동에서 마주치는 현상과 에피소드들을 여러 분과 함께 나누고 고민하기 위한 조진경 대표의 현장이야기입니다.

사이버포래상담원이 인터넷에서 위의 사례를 보고 제게 내밀었을 때, 저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나 봤던 사이코 연쇄 살인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애들한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혹시 저거 누가 장난한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사포상담원들은 “저런 글을 누가 장난으로 올려요, 경험상 볼 때 이런 글은 사실인 경우가 많아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16살이고 다행히 사포들이 올린 답글을 보고 연락을 해와 우리

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직접 보지 않으면 확신이 서지 않을 것 같아 사또상담원과 함께 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11시. 아이는 시간에 맞춰 나왔고, 저는 아이가 약속 시간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올린 글이 사실일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저기 아이를 살피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이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미리 조사 약속을 하고 온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는 성폭력전담팀의 여성조사관에게 감금, 폭행, 협박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조건으로 만난 가해자에게 저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성폭력이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조사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조사실에서 조사관이 묻는 질문에 아이는 또박또박 상황을 얘기했고, 아이는 단지 상황을 얘기했을 뿐인데 동석한 저와 사또상담원은 온 몸의 피가 머리로 모이는 듯 했고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3시간 정도의 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은 ‘조사는 성폭력전담팀에서 했지만 수사는 강력팀에서 하게 될 것이니 며칠 후에 강력팀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했습니다. 조사관 역시 기가막혀 하면서 누가 봐도 이 사건은 성폭력이 분명하다며, 아이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조사는 잘 끝났고 의연하게 잘 진술해준 아이가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동안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저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지, 사실 그 자체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모든 일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사또상담원이 세차례 경찰 조사과정에 동석을 하였고 가해자의 집 앞에서 가해자를 붙잡아 증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33살이었으며, 수사관들 역시 아이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 또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구속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잘 마무리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아이가 먼저 인터넷 상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가해자가 도망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수사관에게 가해자가 도망을 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여러차례 만났던 수사관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수사진행 관련해서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 잡은 범죄자가 도망을 갔다는 것이며, 세 번이나 경찰에 조사동행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사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경찰의 관료적이고 무시하는 듯한 처사를 상담하는 단체로써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담당 경찰과 담당 검사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경찰청, 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진상규명, 잘못이 있다면 책임자 처벌, 흉악범에 대한 조속한 검거, 재발방지대책수립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청과 검찰청에서 각각 이 사건을 조사하였고, 우리는 드디어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찰은 성폭력전담팀에서 초동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담당검사(담당검사는 성폭력전담검사였습니다.)가 전화로 “피해자 진술을 보니 SM(가학적-피학적) Play로 의심할 여지가 있으니 피해자가 SM Play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건지 보강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우선 피해자를 상대로 SM Play를 전제로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는지, 또 이번 사건이 SM Play를 전제로 한 조건만남인지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고, 가해자의 집 앞에서 가해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는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인정했지만, 감금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진행된 조사였기 때문에 경찰은 가해자를 귀가조치 할 수 밖에 없었고, 피

해자를 상대로 다시 증거보장을 하면서 구속에 대해 자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다음날 가해자에게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하였고, 가해자가 자진 출두하겠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그 길로 도망갔는지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던 사이코패스가 수사과정에서 도망을 갔는데 이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수사관들은 체포영장만 나왔더라면 범죄자를 풀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담당검사는 성폭력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어차피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만나왔을 것이고, 수사를 보강하라고 지휘를 한 것은 담당검사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 검·경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6살밖에 안된 아이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수사기관을 믿고 자신의 수치와 공포의 경험을 진술했지만 그 범죄자가 도주하여 언제 보복을 할지 모른다는 또다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현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더 나아가 8월 현재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또 어디서 어떤 아이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문제는 아이가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는 데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인을 만났다면 아이는 어떤 경우를 당했어도 절대 성폭력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피해 진술을 보면서 16세 소녀와 33세 성인 남성 사이에 가학-피학 Play를 조건으로 성매매를 상호간 합의했는지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었는지도 사실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면 저런 일을 당해도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겁니까? 국제법상으로 볼 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대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역시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리는 16세 아이의 조건만남 행위에 더 큰 범죄혐의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성구매자의 입장에 수사기관이 더 치우쳐져 있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구속영장을 받기 위해 수사를 보강함에 있어서도 꼭 임의동행 형식의 수사밖에 없었을까도 고민입니다. 경찰은 아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48시간 구금권을 남용한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데, 16세 아동을 상대로 한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아주 큰 이같은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왜 긴급체포를 하지 않았을까요? 수사기관의 편견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이라는 확신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이들이 가출팸이나 자기들의 조직을 구성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성매매를 일삼는 성인 남성을 상대로 법을 핑계로 자신들이 처벌하겠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도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 전 쯤 저는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이 사건의 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으러가 조사관에게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는 수사기관의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설명받고 진정을 취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사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대하는 수사기관의 편견 때문에 범죄자의 도주를 사실상 가능하게 했음을 진술하였고, 진정 취하 대신 자처하여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물론 제발방지대책으로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여성폭력 관점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여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날은 무척 더웠고 3시간의 긴 조사를 받으며 검찰청을 나설 때는 “아동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회의 도덕성을 알 수 있다”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의 말이 떠오르며, 착잡함과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 활동소식

[제4기 사이버또래상담원 양성교육]

사이버또래상담실의 중심, 2013년 4기 사이버또래상담원을 양성하는 교육이 4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홍대입구에 자리한 Toz에서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양성교육의 기회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던 6명의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낯설지만 같은 기대감으로 배우고 느끼며 즐기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첫째날은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사이버또래상담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본격탐구를 진행하였고, 둘째날은 명지대학교 차미정 교수님과 함께 미술을 통해 자아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은 대표님을 통해 성매매의 전반적인 역사와 개념/맥락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날은 선배상담원들과 격의 없이 만나면서 업무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마구마구 물어보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나올 수 없었던 1명의 참여자를 제외한 5명의 지원자들이 양성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날, 5명의 수료자들은 각자의 다짐을 담은 콜라주와 양성교육의 면면을 세심하게 담았던 영상을 보면서 짧은 교육기간을 웃음과 감동으로 기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사이버또래상담원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였으니.. 한 달간의 인턴십이라는 두 번째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5명의 수료자 중에서 4명이 인턴십에 진입하였고, 이들은 4월 29일~5월 24일까지 약 한달간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뽀뽀하게 짜여진 업무와 과제를 기가 막히게 해냈습니다. 아웃리치 물품 포장부터 뉴스클리핑, 웹전단 제작, 사이트리스트 정리, 사이트운영자 주소록 정리, 청소년드림센터와 방송통신위원회 기관방문, 여러 권의 독서보고서, 그리고 그만큼 많았던 내부토론회 등. 책을 읽고 이해한 것을 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들 지각한 번 안 하고 워낙 그렇게들 살아왔던 것처럼 태연하게 인턴 수료식까지 달려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수료식을 마치고 난 저녁에는 이전부터 기획되어 있었던 부친 아웃리치가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아웃리치까지 기쁨으로 수고하는 인턴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인턴십까지 수료한 4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가 선택하고 마음을 다지는 기회를 갖는 것이었지요. 인턴십 기간 동안 이 일이 자기와 잘 맞는다고 여겨졌는지, 재미와 보람을 통해 성장을 경험했는지, 함께할 인간들은 괜찮은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정리한 후에 정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개별면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고개를 넘어 4기 사이버또래상담원으로 채용된 세 명의 상담원은 [REDACTED]입니다.(짜짜!)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지금, 이들의 모습은 그 때와 또 다릅니다. 소란스럽고 정신없던 입사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익숙한 자태가 찰찰 흐릅니다. 물론 거기에 재기발랄한 농담과 빵빵 터지는 의외성은 여전해서, 사이버또래상담실은 더욱 유쾌한 나날을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4기 여러분, 참 많이 고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워크숍]

7월 15일(월) 오후 2시 30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약 60여명의 관련기관 실무자들이 모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전반에 관한 개정의 의의와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현숙 탁틴내일센터 대표의 사회로 푸른꿈터 김란희 소장이 사이버도매상담실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그동안 아청법 전면개정을 위해 수차례 모여 진행한 선행 작업들의 경과를 발표한 후, 우리 상담실의 조진경 대표가 아청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조진경 대표는 현재 아청법이 가지는 모순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성매매방지법과의 충돌을 피하고 국제법 기준의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법률로 발전하기 위한 지향점과 그를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뒤이어 우리 상담실의 운영위원이기도 하신 박숙란 변호사님께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과 후로 비교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대구여성회 [REDACTED] 대표와 열린터의 [REDACTED] 원장이 앞선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전국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성문화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다양한 지원체계 실무자들이 고루 참석한 이 날에는 특별히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탁틴내일센터의 주도로 성폭력 피해와 아동이용음란물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워크숍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이버도매상담실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전반에 관한 내용에 고루 관심을 가지며, 보다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부지런히 담당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위한 워크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현행 아청법상 대상 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조진경 대표(사이버도매상담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의 과정1)

- ① 1999. 9. 3. 새정치국민회의와 미성년자 매매춘 금지 정책기획단 주최로 ‘청소년성매매처벌등에관한법률(안)’공청회 개최
1999. 11. 2. 국회의원회의(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출
1999. 11. 5. 한나라당,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 법률(안)’ 제출

1) 강병연(2006), 청소년육성제도론, 양서원. pp.234~237. 고수현(2008), 청소년유해환경론, 교육과학사. pp.271~278. 박진규(2013), “청소년 보호정책의 평가와 전망”, 「청소년학연구」 제20권(2), pp.380-381에서 재인용.

2000. 1. 14. 국회 본회의 통과

② 2000. 2.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공포(2000.7.1. 시행)

2000. 10. 2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공포

③ 2009. 6.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 전부 개정(2010.1.1. 시행)

* 전부개정 이유

- 법률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로 개정하여 아동도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함.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 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④ 2010. 4. 15.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포(2010.4.15.시행)

⑤ 2010. 7. 2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포(2010.8.24.시행)

⑥ 2011. 9. 15.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포(2012.3.16.시행)

⑦ 2012. 2.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포(2012.8.2.시행)

⑧ 2012. 12. 18.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공포(2013.6.19.시행)

* 전부개정이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명확히 하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정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소관 부처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게시판에도 신상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확대하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²⁾

2. 정부 행정조직 변천에 따른 주요 청소년정책의 변천³⁾

주무행정부	명칭	시기	기간	특성	비고
각 부처	부처별 추진	48.8~64.9	16년	부처별 산발 산발추진	별도 행정 조직 없음
내무부 무임소장관	청소년보호 대책위원회	64.10~77.8	13년	부처 차원의 조정	문제청소년 규제 위주
국무총리실 문교부	청소년대책위원 회	77.8~88.6	11년	범 정부차원의 조정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 치중

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48&viewCls=lsRvsDocInfoR#0000>

3) 박진규(2013), “청소년 보호정책의 평가와 전망”, 「청소년학연구」 제20권(2), 384p.

체육부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국 청소년보호위원회	88.6~05.4	7년	정부차원의 조정 부처차원의 총괄 집행	전담조직 설치 운영됨. 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됨.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05.4~08.2	3년	청소년조직 통합, 단일청소년 전담조직 출범	국가차원에서의 통합적 정책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 실	08.3~10.2	2년	정부차원 통합	아동과의 통합정책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됨
여성가족부		10.3~현재		가족 및 다문화 가정 정책과의 유기성 지향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

1) (2012. 12. 18.) 개정 전·후 아청법 대상청소년 규정 비교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청소년
내용	(요약) - 성폭력의 대상일 경우 - 음란물의 제작 대상이 되었을 경우 - 성매매, 음란물 제작을 위한 매매의 대상일 경우	(요약) - 성매매 대상인 경우
개정 전	“(아청법의)제2조제2호나목·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 * (아청법의)제2호나목·다목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 (아청법의)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9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개정 후	“(아청법의) 제2조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 * (아청법의)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 (아청법의)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제13조 제1항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의)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제1항은 제외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3조는 제2항만 해당됨(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

2) 법률간 상호 모순과 충돌 발생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지만, 제2조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와 제2조4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다.

- 동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 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범죄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범죄가 아닌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정의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제외한 아동·청소년으로 국한시키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제38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처벌은 하지 않지만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해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의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39조) 수사경력 조회에 그 기록이 들어가서 상습성의 판단근거가 되는 등 사실상 대상아동·청소년

에게 처벌에 준하는 강제적 조치를 두고 있다.⁴⁾ 또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역시 광의에서 볼 때, 형사처분의 일종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 제2조 제4항 다목에서 “성매매피해자란” 청소년⁵⁾,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을 “성매매피해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에서는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에 알선·유인된 청소년의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청법에서는 성매매에 알선·유인된 청소년을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하여 강제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두 법이 상호 모순적이며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 따라서 이러한 모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3) 국제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아청법

우리나라도 당사국 중 하나이고 1991. 12. 20. 자로 적용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이에 대한 선택의정서에서는(대한민국 적용일 2004. 10. 24.) 제1조에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금지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이의 적용에 동의하였다. 제2조 나항에서는 “아동성매매”를 보수나 다른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이러한 범죄가 자국 형법에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4) 보호조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실상 처벌이며 이 때문에 성매매수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너도 처벌된다”는 등 아동·청소년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로 이용된다. 또한 몇 년전만 해도 수사기관이 대상 청소년의 경우 단순귀가조치 중심으로 조치해왔으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역시 성매매유인·알선된 청소년에게 “신고하면 너도 처벌받게 된다”는 말을 하여 사실상 신고를 하기 위해 처벌받을 각오를 하게 함으로써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경우도 상당할 뿐 아니라, 2013년 7월에는 가출범의 일원에게 수차례 성폭력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17세의 소녀를 비행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시키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하는 판결이(연합뉴스 2013. 7. 7. 김수진 기자) 나오는 등 대상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사례들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동은 아청법이 대상청소년을 불처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처분의 성격을 함유하고 있는 ‘소년부 송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에서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5)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6) 이와 같이 두 법의 모순과 충돌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경과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조정·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매매를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성구매자들을 유인한다고 보는 사회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서 또는 밤늦게 돌아다녀서 남성의 성욕을 자극했기 때문에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이성적인 신념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미수 및 공범 또는 참여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되어야 하고, 적절한 벌칙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7조에는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이 범죄를 행하거나 돕는 데 쓰인 자료·자산 및 그 밖의 수단 등의 물품, 이러한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적절하게 압수·몰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과 범죄를 행하는 데 이용된 장소를 임시 또는 최종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피해 아동에 대한 형사제도상 대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할 것과 피해를 입은 아동과 일하는 사람이 적절한 훈련, 특히 법적·심리적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에는 당사국은 완전한 사회복귀 및 신체·심리적 회복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위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국제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아동법의 제정과 효과적인 실행이다. 그렇다면 아동법에 어떠한 목표와 방향,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성착취(CSE)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면서 ‘아동 성착취’를 “불법 거래, 성매매, 매춘 관광, 우편주문 신부, 포르노, 폭행, 근친강간, 강간, 성희롱 등을 통해, 존엄, 평등, 자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아동의 인권을 주로 성인이 말살함으로써, 아동을 학대하고 아동의 성을 착취하여 성적 만족이나 금전적 이득, 영달을 꾀하려는 상습”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상업적인 아동의 성착취’(CSEC)는 “금전적 또는 기타의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또는 적어도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동성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적 교환은 금전일 수도 금전이 아닌 것, 예를 들어 음식, 피난처, 마약 등 일수 있지만, 예외없이 착취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면서, 관련 아동의 기본권이나, 존엄, 자율,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은 말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용어는,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상업적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세계 회의에서 ECPAT가 창안한 이후로 지금까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이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주로 ‘아동 성매매’란 말이 사용되었으나 ‘성매매’라고 부를 때에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성매매는 부도덕과 연결되며, 그 피해자가 아동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편견에 따르는 혐오가 줄어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 성착취’라는 이름으로 바뀌쓰게 되었고, 이러한 명칭 개정을 통해 이것은 아동에 대한 가장 참을 수 없는 인권 침해 현상으로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음과 이 문제에 대한 생각과 사고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정의가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국제적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아동 성매매와 생존을 위한 섹스는 동일한 현상으로, 돈이나 기타의 대가, 예를 들어 음식, 피난처, 마약 등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 성매매란 가능하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보상과 연계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활동은 모두 강간이나 성적 학대다.” 우리가 아동 성매매를 단순히 성매매로 이해한다면 아동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버리고 따라서 해결책은 범죄적인 면에 집

중되기 쉽다. 그 결과, 국가의 의무는 범죄자를 잡는 것 정도로 축소될 수 있고, 아동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쪽은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일개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국제적 수단들을 강구하는 데 있다.⁷⁾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가해지는 성폭력, 성매매 등을 우리는 ‘성착취’ 행위로 분명히 개념정의 하여야 하며 개정될 아청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성폭력과 성매매를 구분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또한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청소년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대해짐을 보장해야 한다.

4)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아청법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은 80% 이상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졌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하거나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인터넷은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꼬여내는 주된 광고매체로 이용되고 있으며, 휴대폰과 인터넷의 광범위한 확산은 성적 서비스를 위해 아동·청소년과 접촉하기 쉽고, 전자적 형태이든, 모의 형태이든 아동 포르노도 구하기 쉽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상에서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등으로 거래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서비스 구매는 알선자가 없이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엄연히 인터넷 알선 사이트나 핸드폰의 알선 앱이 알선행위자가 되는 상업적 성착취 행위이다. 또한 인터넷 상에는 수많은 사이트들을 통해 성구매 행위를 독려하고 성구매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성매매 영업 광고와 성매매 이용 후기 사이트들이 개설되고 그곳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상이 불법적으로 노출,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청법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으며 지극히 하찮은 행위로 취급되어 적절한 처벌과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이뤄지는 성착취 행위와 아동 포르노 문제는 앞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따라서 인터넷 전문가들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들, 앱개발자들의 협조가 법 집행에 필수적이다. 아청법은 이를 포함하여 엄중한 처벌과 대책, 이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아청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1) 대상아동·청소년 정의 개념 삭제

현행 두 법률(아청법과 성매매 처벌법)의 모순과 충돌을 바로잡고 국제법의 기준에 맞는 법의 개정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 아청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

7) ‘아동성착취’에 대한 부분은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2004),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공약 이행 점검회의 참가 보고서”를 발췌, 인용하였다.

별된 성범죄에 희생된 아동·청소년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받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였고,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대해지게 하기 위해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현행 법률의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등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현행 법률의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삭제하였다.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시킨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는 통일하여 전문기관에서 각 피해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5조와 제46조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에 관한 조항은 제45조에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통합시켰다. 제47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장에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현행 법상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실시해오던 교육 등의 기능을 담당해왔던 기관을 개정법에 전문기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조사, 심리재판함에 있어 관련 기관과 교육기관에 연계하는 것을 수사기관 및 법원의 의무로 명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를 정비하였다. 개정법률안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규정함에 따라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의 장에 제8조의2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매매 등을 신설하였고, 제12조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변경하였으며, 나아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였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으로, 제14조 강요행위 등은 강요 등으로,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은 알선영업 등으로,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는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로 변경하여 자칫 ‘행위’라는 용어 때문에 ‘범죄’라는 사실이 희석되지 않도록 하였다. 제17조, 제18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매매 등 상해·치상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매매 등 살인·치사를 신설하였고, 신고의무자 등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장에 국가공무원법의 국가공무원을 삽입하였다. 제27조 증거보전의 특례의 장은 형사제도상 대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였다.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장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의 장에서 역시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제8장을 신설하여 범죄수익금을 몰수, 추징하고 이를 피해아동·청소년의 자활 및 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대응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제15조 알선영업 등의 장에 정보통신망에서 유인·권유·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게시 또는 공유한 자 역

시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민간단체와의 협조 의무, 정보통신망에 경고 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신용카드업자 등의 신고의무와 제34조의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인터넷 전문가들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들, 앱개발자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게 하였다.

4) 국가와 기업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와 기업의 책임을 개정 법률안에 분명히 하였고, 제6조의2를 신설하여 3년마다 국내외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활동]

1. 부천역 연합 아웃리치

우리 기관은 5월 24일(금) 오후 5시 20분부터 다음날 동이 트기 직전까지 부천역에서 오프라인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당일 오후에 사이버도매상담원 양성교육 인턴십 과정을 막 수료한 4명의 사또와 상담팀 2명, 서울위기교육센터 2명, 사무국장, 대표,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5명이 대거 참여하여 연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천역 인근의 피씨방, 노래방, 멀티방, 모텔 등 177개의 성매매 가능업소를 방문하였고, 199명의 십대여성들을 만나 사이버도매상담실을 홍보하였습니다.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의 도움을 받아 부천역 앞에 부스를 설치하고 OX퀴즈와 개별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인턴십을 수료한 사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어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다.

2012년에도 부천역에서 아웃리치를 진행하며 성매매 가능업소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업소들이 사이버도매상담실을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아웃리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좀 더 바빠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10대 청소년에게 성폭행, 감금 등을 행한 가해자 도주사건

우리 기관은 10대 청소년에게 성폭행, 감금 등의 범죄를 행한 가해자가 수사과정 중에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내담자와 상의한 뒤 경찰청, 대검찰청, 국민신문고 총 3곳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국민신문고로부터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6월 26일 조진경 대표, 박숙란 운영위원(변호사), 사또상담원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방문하여 3시간동안 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여전히 도주 중에 있으며 언제, 어느 곳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와 대응에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조진경 대표의 '길에서 쓰는 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업]

1. ‘청소년성장캠프’

지난 3월부터 야심차게 준비해 온 제1차 ‘청소년성장캠프’가 5월 27일(월)부터 6월 1일(토)까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1차 캠프에는 5명이 참여하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1명이 캠프 도중 귀가하면서 총 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무용동작치료, 성매매바로알기, 진로직업체험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던 제1차 캠프가 더 많은 성매매피해 청소년들과 만났었다라면 바랄게 없었겠지만,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캠프로서는 만족스러웠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캠프에 참여했던 참여자 모두 귀가 혹은 쉼터에 입소하면서 삶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수시로 본 센터와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1차 캠프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 7월 28일(일)부터 8월 2일(금)까지 진행된 제2차 ‘청소년성장캠프’에도 총 4명이 참여하여 5박 6일을 행복하게 즐겼습니다. 물론 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조금씩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에 희망을 불어넣는 참여자들을 보면서 지쳤던 실무자들은 어깨를 다시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저희와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계 부탁드립니다.

2. ‘지지모임’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제1차 ‘청소년성장캠프’ 수료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소재의 오션월드로 지지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지지모임은 제1차 ‘청소년성장캠프’ 수료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수료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는 방식으로 기획해 보았습니다. 낮 시간에는 오션월드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였고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로 모처럼 여유를 즐겼습니다. 식사 이후에는 숙소에서 한국의 고전게임인 말뚝박이,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숨바꼭질과 같은 게임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즐기며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와 행복한 웃음 속에 게임을 마무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 지지모임은 참여자들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상담원들과도 더욱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참여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도 관심과 기도로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례회의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6월 13일(목), 제1차 ‘청소년성장캠프’ 참여자들의 사후지원을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관의 대표, 상담팀장, 교육/프로그램팀이 참석한 가운데 내담자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개입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캠프에 참여했던 청소년들 모두가 현재까지 본 센터와 연락이 지속되고 있어 조금 더디지만 새로운 삶을 위한 첫발을 내딛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회의에는 외부전문가들을 모시고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사례개입 방안을 모색해볼 예정입니다.

4. 아웃리치

<학교앞 아웃리치>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사이버포래상담실 상담팀과 합동으로 7월 9일(화)부터 18일까지 4회에 걸쳐 강서구, 양천구 소재 6개의 중고등학교 상담실(wee 클래스)을 방문하여 본 센터의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물품(생리대, 전단지)을

나눠주었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 있고 청소년에 대한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도 학교 상담실과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학교를 방문하니 청소년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웃리치에는 좀 더 많은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부천역 아웃리치>

7월 26일(금), 제2차 ‘청소년성장캠프’를 앞두고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와 연합으로 부천역에서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부천역은 유흥가가 잘 발달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이 많아 가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날, 성매매피해 청소년 4명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외 움직이는청소년센터를 방문한 가출 청소년들에게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홍보물(생리대)을 배포하였습니다.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하겠다며 이들을 노리고 있는 성인 남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거리의 청소년들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고 캠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교육]

1. 독서토론회

3월에 이어 4~5월에도 ‘성소수자’를 주제로 「3×FTM 세 성전환 남성의 이야기」와 「후천성 인권결핍 사회를 아웃팅하다」를 읽고 자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독서토론회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보며,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여성주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흑설공주 이야기」를 읽고 이 책의 번역가이신 ‘박혜란 선생님’을 모시고 책에 실린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번역의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해 가는 사또들을 보며 세상의 다양한 시각이 존중받을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7월에는 ‘문화이야기’라는 주제로, 와인전문가 ‘박여라 선생님’의 한옥집을 방문하여 와인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 예쁜 한옥집에서 모두가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독서토론회가 기다려지네요~

‘독서평’ 잠깐 보기

「3×FTM 세 성전환 남성의 이야기」를 읽고..

나는 살아오면서 나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그동안 나는 무얼 입을까?, 먹을까? 등 순간의 고민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들은 자신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항상 진짜 남자가 되고 싶어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사이버포래상담원 ○○○

「후천성 인권결핍 사회를 아웃팅하다」를 읽고..

동성애인권운동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것 같다. 에이즈 관련해서는 거의 아는게 없다. 예전에 윤 가브리엘분이 나온 다큐를 봤는데 나도 여전히 편견이 있다고 느꼈다. 잘생기지 않는 중년 게이에 대한 낯설음이 있었다. 다큐를 다 보고 나서는 그 낯설음이 없어지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었다. 이는 성매매피해 여성들에게도 똑같은 것 같다. 나도 성매매를 경험했지만 나와 다른 형태의 성매매를 경험한 사람한테 낯설음을 느낄 수 있다. 낯설음을 차별로 나타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사이버포래상담원 ◎◎◎

「흑설공주 이야기: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한 동화」를 읽고..

이 책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이야기는 <미녀와 야수>를 바꾼 <못난이와 야수> 같다. 남녀 모두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에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었다고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선 이쁘지 않거나 뚱뚱하면 무시 당하는 여자가 많다. 그런 점에서 내맘에 쏘옥 들었던 이야기였고 자기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부끄럼없이 행복하게 사는 못난이가 너무 멋져 보였다.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의 눈이 낮아져서 나에게도 이런 행복이 찾아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교훈도 얻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벌거벗은 여왕님>을 읽고 나서 나의 과거가 생각났다.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비단옷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은 다들 들통나고 말았다. 나도 예전에는 나의 잘못을 숨기려 많은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언젠간 들통나게 되었다. 지금은 그런 태도를 고쳐 다행이고 앞으로도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이버포래상담원 ◇◇◇

2. 외부토론회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회>

6월 5일(수), 사이버포래상담실의 모든 실무자들은 우리 기관의 숙제 중 하나인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발표 및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김은실 교수(이화여대 여성학과)와 이은심 전문연구원(중앙대 인권센터) 등을 비롯한 전문가 및 관련자들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며 10대들의 위치에서 ‘집’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또들도 10대의 위치에서 바라본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청회&현장단체 워크샵>

6월 14일(금), 성매매방지법 9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환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성착취 반대 및 성매매비범죄화 공동추진위원회(이하 비범추위)의 주도로 성매매방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작업에 함께 했던 사이버포래상담실은 9명의 실무자가 모두 참석해서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비범추위 집행위원장),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의 발제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소속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예상보다 많은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여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시간으

의 부족으로 못다 나눈 이야기들은 7월 16일(화) 현장단체 워크숍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요한 쟁점은 성매수자/알선자 등의 처벌을 강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여성들을 비범죄화는 것으로,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쟁이 예견됩니다. 하지만 반성매매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사이버포래상담실은 앞으로도 꾸준한 행보를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필리핀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한 연대회의&실태조사 보고회 및 기자 간담회>

필리핀 아동성착취를 통해 태어난 코피노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별다른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아, 사이버포래상담실과 탁틴내일, 국제아동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입양인의원가족모임 민들레 등을 주축으로 6월 12일(수) 첫 번째 연대회의를 탁틴내일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연대회의에서는 코피노 문제가 명백한 아동성착취임에 동의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여론 활동과 이슈파이팅을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6월 17일(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ECPAT(국제아동성착취반대단체)의 한국지부를 맡고 있는 탁틴내일이 시행한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한국 남성들이 관광과 유학, 업무차 머문 필리핀에서 자행한 성매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실태들이 밀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ECPAT International의 '아미한 전 대표'가 참석하여 필리핀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 피해상황을 직접 증언하기도 하여 우리의 무감각한 인권의식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이버포래상담실에서는 ■■■■■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국제 성착취 근절에 대한 우리 기관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국제 성착취 근절과 관련하여 타기관과의 연대활동을 지속할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방안 모색'>

7월 3일(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13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하루를 가득 채워 진행되었는데, 사이버포래상담실 실무자 모두가 참석하여 열심히 동아시아 지역의 성착취 문제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동아시아 몇 개 국가 대표들의 발표와 국제기구 활동가들의 생생한 활동담을 들으며 우리와 같은 고민의 지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국가별 차이를 새롭게 알게 되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착취와 관련하여 한국이라는 무대에 국한하여 고민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로 그 시야를 넓혀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이글은 지난 7월 3일(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주관한 「2013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 참관기입니다.

조진경 대표(서울위기교육센터, 사이버포래상담실)

지난 7월 3일(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주관한 「2013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움: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방안 모색」에 다녀왔다.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이 상당히 큰 공간임에도 그 큰 방이 사람들로 꽉 채워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통역기며 자료집이며 개인 가방 같은 소

소하고 꼼꼼한 준비들에서부터 무대, 초청 인사에 이르기까지 주최측이 무척 공들여 이 행사를 준비한 것 같았다. 이어진 개회사와 환영사 등의 연사들로 볼 때도 이 행사에 대한 한국사회 전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관심을 잘 읽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개회, 환영사가 끝난 후 바로 사진촬영을 하겠다며 성매매방지 단체의 대표자들을 나오게 하여 사진을 찍는 등, 본 행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행사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을 모두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린 진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바람직하진 못했던 생각이다. 중요한 인사들이 행사 내내 자리를 지킬 수 없음과 그에 대한 배려, 그분들의 참석을 기념하고 싶은 주최측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졸지에 덜 중요한 사람이 돼 버리고 들러리를 서게 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과거에도 개회사나 축사를 위해 오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본행사 시작전에 기념사진을 찍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부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방안 모색'이다. 나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 주제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위상과 책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를 국제 사회의 한 모델로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심포지엄은 필리핀 미리암 대학교 오로라 자바테 드 디오스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였고, 이후 캄보디아 여성부 차관보인 호 말린이 캄보디아 정부의 반인신매매 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유엔 산하기구(UNIAP)에서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세바스찬 볼은 인신매매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메콩강 유역의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당 지역 6개국의 협력에 대해 소개했으며, 남성과 아동을 포함한 노동착취의 문제 역시 중요한 인신매매임을 강조하고 싶어했다. 세바스찬 볼의 인신매매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이 여전히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거대한 규모로 존재하는 성착취 인신매매 문제를 희석시켜 버리는 위험이 있지 않음을 질문한 지역단체 대표의 집요한 질문은 사회자 변화순의 농담과 함께 많은 이들을 웃게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세바스찬 볼이 한국에서 식은 땀을 엄청 흘렸겠구나 하는 약간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고 메콩강 유역에서 엄청나게 발생하는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직시해온 당사자로서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신매매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언제나 주변적 위치로 전락되고 마는 젠더문제의 현실에서 이 문제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단체대표의 문제의식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 지원과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각 지역 민간단체의 사례발표에서는 필리핀 CATW-AP의 진엔리케즈 대표, 태국 뉴라이프센터 재단의 완디추엔추프라이, 한국 두레방의 ■■■■■ 원장이 발표자로 나서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을 위한 우수사례를 나누었다.

2001년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들 문제로 처음 한국에 초청했을 때부터 함께 연대해 왔던 필리핀의 진엔리케즈 대표의 그간의 짧지 않은 시간동안 점점 발전하고 있는 여러 실천들을 들으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표준모델 개발이라는 이슈로 어떤 공동대응이 있을 수 있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존재하는 국가간 테이블에 이 이슈를 제안해볼 수 있겠다는 진엔리케즈 CATW-AP 대표의 발언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과 성과들을 국제 사회의 한 모델로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내게는 큰 힘이 되었다. 캄보디아나 태국과 같은 소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국가들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정부나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 듣게 된 것은 이번 심포지엄으로부터 얻은 큰 성과이다. 그러나 그들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간단한 소개정도로 그친 것은 매우 아쉬웠으며, 특히 태국의 경우, 태국에서도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원주민

부족에 대한 성착취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노고에 고개가 숙여지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기도 했지만, 태국 중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성매매에 대한 실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심포지엄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다음 번 국제회의는 한 국가를 정해 다양한 방식과 인적구성으로 깊이있게 국가간 상호 협력방안이나 공동 대응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유영님 두레방 원장의 발제를 들으며 개별 단체로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한 앞선 실천에 놀랍고 자랑스러웠지만, 이 주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아시아의 책임적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성매매나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문제는 일국가 단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과 같은 국제 회의가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국제 심포지엄은 좀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대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되고 준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회의]

1. 연대회의

<성착취 반대 및 성매매여성비범죄화 추진위원회 모임>

성착취 반대 및 성매매여성비범죄화 추진위원회(이하 비범추위)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에서 제안하여 2013년 2월 28일 출범 후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름, 사이버포래상담실, W-ing, 민변 성매매방지팀 등의 연대단체와 개별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범추위는 2012년 성매매여성에 의해 제기된 위헌소송청구를 계기로 현재까지도 성매매를 여전히 개인간에 발생하는 사적인 행위로 보는 시각에 문제제기하고,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위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비범죄화하며, 성구매자/알선자 등의 처벌을 강화하여 성산업 착취 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후 비범추위는 여론을 조성해 나가면서 성매매여성들이 비범죄화 되고 성착취 구조가 해체되는 그날까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모임>

아동·청소년관련 성착취 범죄 전반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전면개정모임이(뉴스레터 1호 참조) 지난 1월부터 계속되어 이후에도 6차례 가량 추가 진행되었습니다(5/10, 5/27, 5/31, 6/13, 6/28, 7/10). 탁틴내일, 전국연대, 민변 여성위원회 박숙란 변호사, 사이버포래상담실을 구성원으로 한 모임에서는, 아청법 조문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살피면서 개정의 필요에 공감하고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내는 등 많은 밤을 지새우며 치열하고 보람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7월 15일에 있었던 워크숍의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발의, 기자간담회 등의 후속작업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서울지역성매매피해지원시설협의회 회의>

5월 9일(목) 오전 10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이하 서지협)에 우리 기관이 정식 회원으로 정기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은 회칙개정과 관련기관 신규 회원가입 등의 안건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기관은 서지협 회원단체의 분류형식 중 상담소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서지협 각 회원단체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관의 조진경 대표는 지난 2006년 서지협 창립 초기부

터 2008년까지 부대표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7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교육장에서 열린 서지협 정기회의에서는 오는 10월 12일(토)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서지협 캠페인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이버포래상담실은 홍보부스를 통해 아청법 전면개정과 청소년성매매 실태, stop 성구매 등의 홍보활동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지협 회원단체들과 함께하는 사이버포래상담실의 활동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대표자 간담회>

6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 본 기관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서울위기교육센터를 포함한 10개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청소년성장캠프 제1차 대표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2013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등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센터 사업운영 평가계획과 회계집행의 기준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기관이 준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연구 모임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전국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공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내부회의

<2013년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정책회의>

7월 12일(금), 사이버포래상담실은 2013년 상반기 사업들을 평가하고 그를 토대로 하반기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한 달 전부터 각 팀에서는 상반기 사업 평가와 하반기 사업 계획을 위한 개별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렸고, 그것들이 기반이 되어 약 9시간에 걸친 긴 회의가 성공리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포래상담실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독립하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낸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길에 함께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힘으로 우리는 지치지 않고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 심리지원단 구축을 위한 자문회의

사이버포래상담실은 성매매피해 청소년 심리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양성하여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6월 중순부터 사이버포래상담실 심리지원단 단장 명지대학교 '■■■■' 교수님과 운영위원 '김동심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복된 외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도와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임파워링하기 위해 맞춤형 심리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심리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만날 수 있도록 심리지원단 구축에 전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4. 사이버포래상담실 제3차 운영위원회

2013년 제3차 운영위원회가 7월 22일(월) 오후 6시에 공덕동 한정식집 <예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섯 명의 운영위원과 3명의 사무국 식구들이 모여 3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사업과 상담내용 등을 검토하고 하반기 사업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단 구축과 단체명칭 개정 등과 관련한 보다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날 운영위원님들은 6개월여의 시간동안 사이버또래상담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쓴 실무자들의 노고를 잔뜩 치하해주시며 함께 기뻐해주셨구요, 저희는 그간 상담실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하면서 맛난 음식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 덕분에 늘 든든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연대활동]

1.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기관방문

5월 14일(화), 상담팀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또래상담실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소개하고 청소년드림센터의 각 공간들을 둘러보며 직접 체험해보고 돌아왔습니다. 곳곳에 묻어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고, '집'처럼 따뜻하게 구성된 공간에 감탄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와 협력하여 위기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고민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실천들을 구상해야겠습니다.

2.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영상제작 자문회의

6월 20일(목),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실무자 두 분과 감독님, 작가님이 함께 성매매영상 제작 자문을 위해 저희 기관을 방문하셨습니다. 준비된 시나리오에 우리들의 경험으로 현실성을 더해 성매매 예방을 위한 멋진 교육, 홍보 자료로 탄생될 수 있도록 긴 시간 이야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영상이 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 인터넷 성매매예방 및 채팅상담 활성화 제안을 위한 네오위즈 방문

7월 17일(수), 여성가족부의 주선으로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기획교육팀과 함께 (주)네오위즈인터넷 세이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사이버또래상담실의 사이버아웃리치 활동을 소개하고 인터넷 성매매 모니터링을 위한 세이클럽의 자정노력을 독려했으며 이를 위한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세이클럽 측에서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사이버또래상담실 배너 게시, 신고와 관련한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해주어 앞으로 사이버아웃리치 활동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세이클럽뿐 아니라 인터넷 성매매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많은 온라인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제공 업체 및 기업들이 성매매예방을 위한 활동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함께 해 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행사]

1. 개소식 '말하는대로, 생각하는대로, 행동하는대로'

5월 2일(목), 사이버또래상담실이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범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우리 기관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화곡8동 주민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축하의 마음으로 참석해 주셔서 준비된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유관단체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이버또래상담실의 비전에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사이버또래상담실은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상담실을 찾아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의 마음은 저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과 멀리서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9명의 식구들은 화곡동에서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이버또래상담실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성매매 모니터링 및 신고 방법 교육

본 기관은 성매매피해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자 사이버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신생 성매매알선 및 광고 사이트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고민하던 중 지난 5월 8일(수) 사이버포래상담원 인턴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상담팀과 교육/프로그램팀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활동 목적이 온라인 상의 사이트를 차단, 폐쇄하는 것에 그쳐, 사이트 운영자나 업소에 대한 처벌까지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방법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일반 시민들도 보다 쉽게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신고하여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해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에 성매매알선 사이트 신고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트 발견시 먼저 음란물 사이트인지 성매매 사이트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선정적 정보와 구분해야 한다. 선정적 정보의 경우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만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음란정보는 성기,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또는 성행위 묘사가 포함된 정보를 말하며 성매매 알선, 유도, 조장, 방조 정보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소개와 같은 성매매 정보를 말한다.
2. 조건만남 유사표현으로 ‘섹스파트너’, ‘섹파’, ‘애인대행’, ‘파트너’ 등의 문구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행위 관련 문구로는 ‘숏타임’, ‘긴밤’, ‘올나잇 출장’, ‘섹스’, ‘오렐’, ‘애널’, ‘섹스파트너’, ‘섹파’ ‘69’, ‘입사’, ‘질사’ 등의 문구가 사용된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사이트로 신고할 경우 위와 같은 문구들의 사용여부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 신고시 해당 증거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단, 역할대행, 애인대행 사이트의 경우 초기 개설 목적이 성매매 알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와 같이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만 있으면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3. 사이트에서 성매매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그와 같은 정보가 해당 사이트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조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많이 제시하는 것이 사이트 폐쇄를 위해 더 효과적이다. 성매매 정보가 사이트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정도의 조치로 끝나버릴 우려가 있다.
4.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사이트 차단으로 조치된다. 하지만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다면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hois.kisa.or.kr>)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은 주로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의 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사이트(www.singo.or.kr)를 이용하시거나 사이버포래상담실()로 해당 정보를 보내주시면 자체적으로 추가 모니터링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의 성매매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립니다.

■ 짤막소식

- 사이버포래상담실에서는 2013년 5월 15일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상담실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카카오토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홈피를 통해 청소년/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명록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토리 [REDACTED] 미니홈피: [REDACTED]

- 다음 오프라인 아웃리치는 10월 12일(토)에 예정된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청계천 캠페인행사에 참여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11월에는 주안&부평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이버포래상담실은 한 해 동안 쉽 없이 달려온 활동가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수교육(10월 16일~18일, 2박3일 예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TX 기차를 타고 시작할 우리의 목적지는 용필이 오빠가 그리도 돌아오라고 외쳤던 '부산!' 시원한 바다도 보고, 회도 실컷 먹고, 10살을 넘긴 베테랑 상담소 살림에도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선한 기운도 팍팍 넣어드리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옴팡지게 놀고 와서 따끈따끈한 후기 올려 드릴테니, 기대해주세요와요.
-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사업인 '청소년성장캠프'가 10월 7일(월)~12일(토), 11월 25일(월)~30일(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매매피해 또는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저희 프로그램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연계 부탁드립니다.
- 지지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사이버포래상담실의 후원인이 되어주세요.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청소년/인터넷 성매매피해 방지활동과 성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후원자 명단

<CMS 약정 후원자>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단체후원/특별후원>

[REDACTED]
[REDACTED]

<물품후원>

[REDACTED]

[Redacted text]

<개소식 후원금>

[Redacted text]